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024. 9. 30.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02호로 2024년 9월 13일 이순우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계약내용이나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대행업체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0조제4항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신설하여 규정함.

○ 검토결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대행업체 평가를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함이 그 목적으로 보임.

평가대상: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6개

구분	업체명	담당지역
1권역	동일환경(주)	○ 여의동, 당산1,2동
2권역	우성환경(주)	○ 문래동, 양평1,2동
3권역	동진환경(주)	○ 영등포동
4권역	남서울환경(주)	○ 대림1,2,3동
5권역	경청산업(주)	○ 영등포본동, 도림동, 신길1,4동
6권역	삼원환경(주)	○ 신길3,5,6,7동

- 우리 구는 해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실시¹⁾하고 있으며,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 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용역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음.

1) 2023년도는 8월~12월에 걸쳐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서 용역 실시

□ 평가분야 및 배점

구분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현장 평가	실적서류 평가
평가항목	30	40	30
평가배점	올바른 수거(15) 생활환경 보전(6) 시민편의 확보(6) 종합만족도(3)	수거지역 점검(20) 청소차량 점검(4) 적환장, 차고지 점검(5) 안전·보건관리 점검(8) 작업자 만족도 조사(3)	민원처리(5) 청소인력 관리(10) 청소장비 관리(6) 사업장 안전관리(7) 지역사회 참여도(2)

- 주민만족도 평가의 경우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1:1 대면조사를 조사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거시 잔재 쓰레기 발생, 과도한 소음 및 악취발생 등이 주요 주민 불편사항으로 평가됨.
- 현장평가는 연구원 1명과 시민대표 2명(3개조) 현장 평가단으로 편성하여 현장의 청결상태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작업자 위생안전 관리분야에서 샤워장·화장실 부족이 개선 사항으로 지적됨.
- 마지막으로 실적 서류평가는 현장 검증을 병행한 평가로 폐기물 수거시 인력 편성 운영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업무수행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한다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만족도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대행업체별 종합 평가 결과

구분	평가 결과			계	순위
	평가항목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배점	30.00	40.00	30.00 (+2.00)	100.00 (+2.00)	
동일 환경	20.00	36.40	27.27	83.67	1
우성 환경	19.96	34.00	24.58	78.54	6
동진 환경	19.81	35.59	27.10	82.50	3
남서울 환경	19.82	33.26	25.91	78.99	5
경청 산업	19.95	36.10	26.29	82.34	4
삼원 환경	19.88	36.59	26.07	82.54	2
평균	19.90	35.32	26.20	81.42	

2023년 대행업체별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

구분	평가 결과				계	순위
	평가항목	올바른 수거	생활환경 보전	시민편의		
배점	15.00	6.00	6.00	3.00	30.00	
동일 환경	9.77	3.82	4.48	1.93	20.00	1
우성 환경	9.63	3.83	4.54	1.96	19.96	2
동진 환경	9.61	3.81	4.48	1.91	19.81	6
남서울 환경	9.68	3.81	4.40	1.93	19.82	5
경청 산업	9.77	3.78	4.48	1.92	19.95	3
삼원 환경	9.70	3.73	4.55	1.90	19.88	4
평균	9.69	3.79	4.48	1.92	19.90	

2023년 대행업체별 현장평가 결과

구분	평가 결과					계	순위
	평가항목	수거구역 현장평가	차량 관리	적화장 및 주차장 관리	작업자 위생·안전		
배점	20.00	4.00	3.00	8.00	5.00	40.00	
동일 환경	20.00	4.00	3.00	5.55	3.85	36.40	2
우성 환경	17.88	4.00	2.72	5.55	3.85	34.00	5
동진 환경	19.77	4.00	3.00	5.55	3.27	35.59	4
남서울 환경	16.21	4.00	2.83	5.88	4.34	33.26	6
경청 산업	20.00	4.00	3.00	5.55	3.55	36.10	3
삼원 환경	19.88	4.00	2.66	5.66	4.39	36.59	1
평균	18.95	4.00	2.86	5.62	3.87	35.32	

2023년 대행업체별 서류평가 결과

구분	평가 결과					계	순위
	평가항목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	인력 관리	장비 관리	안전 관리		
배점	5.00	10.00	6.00	7.00	4.00	32.00	
동일 환경	4.20	8.43	4.64	7.00	3.00	27.27	1
우성 환경	3.60	7.18	3.90	6.50	3.40	24.58	6
동진 환경	4.20	8.20	5.00	6.50	3.20	27.10	2
남서울 환경	3.90	6.26	4.95	6.80	4.00	25.91	5
경청 산업	3.90	7.73	4.66	7.00	3.00	26.29	3
삼원 환경	4.20	7.29	4.38	6.80	3.40	26.07	4
평균	4.00	7.51	4.58	6.76	3.33	26.20	

참고 자료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